

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(정하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3. 11.

발 의 자 : 정하영, 강승수, 권기만
김성현, 박세진, 박주연
손홍섭, 윤영철, 황경환
김익수

1. 제안이유

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
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
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다.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
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10조)
- 라.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, 공익신고자에 대한
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(안 제12조 ~ 안 제1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련법령 : 붙임

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”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.
2. “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”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보조금”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)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2.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
3.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시민·사회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4.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
6.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
7.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.

1. 구미시의회 의원 1명
 2.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
 3. 법관, 교육자,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4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)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(이하 “환경조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지방세 세무조사 면제)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(우선구매 등 지원)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조금 지급)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「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표창의 수여)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개인,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2조(공익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공익신고자의 보호 등)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)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기업, 경제단체,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
2.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

제15조(교육지원)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홍보 등)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

제17조(민원사무처리의 특례)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■ 공익신고자 보호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